

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1-25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021년 6월 1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-25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1년 6월 1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2. 공고기간 : 2021. 6. 11. ~ 2021. 6. 25.(15일)
- 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김*철	1982. 08. 26.	0178200274100004926	₩31,860,000	전남 신안 중도면 병풍 1 길
2	황*하	1974. 12. 13.	0178200274100004932	₩47,790,000	충남 천안 서북구 서부 8 길
3	강*희	1966. 08. 03.	0178200274100004930	₩16,264,800	대전 서구 관저북로 14
4	고*석	1961. 07. 25.	0178200274100004915	₩31,644,000	대전 동구 역전 4 길
5	송*희	1962. 09. 29.	0178200274100004935	₩21,546,000	경기 부천 소사로 201 번길
6	양*필	1988. 02. 28.	0178200274100004924	₩43,902,000	경기 평택 서재 7 길
7	이*의	1978. 03. 18.	0178200274100003758	₩12,111,120	충남 태안 원북면 옥파로
8	최*영	1962. 01. 05.	0178200274100003760	₩31,860,000	충남 천안 동남구 미나릿길 6-3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9	전*수	1966. 07. 02.	0178200274100004920	₩29,268,000	서울 금천구 가산로
10	정*민	1982. 06. 24.	0178200274100004901	₩8,391,600	충남 아산 어의정로 92-7
11	정*철	1967. 03. 20.	0178200274100003765	₩21,999,600	대전 서구 길평길
12	진*갑	1962. 01. 03.	0178200274100004913	₩1,506,000	대전 서구 탄방로 7 번길
13	진*갑	1962. 01. 03.	0178200274100004906	₩32,529,600	대전 서구 탄방로 7 번길
14	이*주	1972. 08. 03.	0178200274100004916	₩20,941,200	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 11길 55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

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, ☎ 042-347-2106, 2105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